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

의안 번호 1758

발의년월일 : 2018. 10. 발 의 자 : 김낙주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,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 자긍심을 고취하 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, 상장, 감사장(패)으로 구분하며,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음.(안 제4조, 제8조)
- 나.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추천 은 기관·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됨.(안 제10조)
- 다.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함.(안 제12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.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6. 예산 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10월 1일 ~ 10월 20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"의견없음"

8. 부서협의 결과 : 해당없음

9. 참고사항

10. 관련부서

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,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·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- 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하남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이 행한다.
- 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(패)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.
 - 1.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
 - 2.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
 - 3.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·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
- 제6조(감사장(패)) 감사장(패)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- 제7조 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1. 각종 경진대회·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

- 2. 학술・예술・체육,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- 3.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
- 제8조 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.
- 제9조 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 식에 따라 수여한다.
 -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,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- 제10조 (대상자 추천)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·단체장 및 하남시의 회 의회사무과장이 한다.
 - 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공적심사)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12조 (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「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사무과장, 전문위원 2명, 의정팀장, 의사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담당자가 된다.
 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위원회가 심사・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- 제13조(포상 통제)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
 - 2.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(중앙, 경기도 또는 하남 시)
 - 3.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 - 4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
 - 5. 재직중 형사처분(벌금형 포함)을 받은 자
 - 6.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제14조(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)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하남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한다.

제	<u>ই</u>				
		丑	창	장	
			주소 !	또는 소속	
			직	성명 :	
			(표창문)		
			년 월	일	
		하남시의호	리이자	인	
		<u> </u>	I-I O	Ľ	

제	<u>⊽</u>						
		감	Д	ŀ	7	장	
				주소 또	는 소식		
				직		성명 :	
			(감 시	ㅏ문)			
			년	월	일		
		하남시의회9		2	근	인	
		시민시키지:	-l ö			(L)	

제	<u>ō</u>						
		상			장		
				주소 또	드는 소석	<u> </u>	
				직		성명 :	
			(상 7	장 문)			
			년	열	일		
		하남시의회		Е	Ξ.	인	

공 적 조 서

성 명			(한 자)						
생년월일			군번 (군인의	[경우)					
성 별			국적 (외국인의	· 경우)					
주 소									
직 업			소속						
직 급		직 위		대외직명					
근무기간			공적분이	F					
공적요지(5	0자 내외)		·	·					
추천훈격			추천순위						
		조	사 기	\ \					
소 속				직 위					
직 급				성 명					
위 기	록이 틀림없음	-을 확인합니	다.	년 월 일	<u>]</u>				
	추 천	 관		(인)					

	주	요 학	력	및	경	력		
년 월 일	0]	력			년 월	일	০]	력
	과거 표	창기록 (공	훈장.	포장	표창별	로 기	록)	
년 월 일	내	용			년 월	일	내	8
		공	적	사	항			

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

소속기관				직	위			직 급			
્રાને 1 1 ને	한글			생년	월일				([<u>}</u>	세)
성 명	한자			군번(군인)						
■ 채 ²	직자 🗆	정년토]직 [] 명예:	퇴직 🗆	의원민	ᅽ직	□기	타		
공무원의종류		재 직	フ] :	간	j	투 정 경	직	~	(년	월	일)
일 반 직	~	(년	월)		3	可 5	원	~	(년	월	일)
별 정 직	~	(년	월)		1	子 5	인	~	(년	월	일)
기 능 직	~	(년	월)		<u>-</u>	군 무 위	린	~	(년	월	일)
고 용 직	~	(년	월)		7	기타()	~	(년	월	일)
합 계 🤊	D					년 월	일				
제외기간					— 직	위해제	:	~	(년	월	일)
합 계 🔾						년 -	월	일			
よし かけいしつしか	a) (1)	1 ਜੋ	01	റി	ネ	<u></u> 키중거					
실 재직기간(0	(J-(J)	년	월	일	千	천훈격					
	종	류	Ç	일 자	과;	 거표창		포 상	명	수여	일자
징계,형벌	해당없	유			(모	범충리표	(ઇવ્યું				
작 성 자	 (인사담당	 }자)			Ş	학 인	자(ㅗ 자치행	 정과	장)	
직급	성	명			(인) 직	급		성명		(인	<u>l</u>)
위 기재사형	는 인사	 기록원	본과	다름앏	 것이 정	 확하게	기호	 루하였 _旨	음을	확인	<u></u>]함.
			Ļ	견 월	일						
	기	관	명 :				(직	인)			

※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.

개인별 업무실적

소	속	직 급 (직 위)	성 명 (생년월일)	성별	근속기간 (연, 월)	도지사이상 표창현황					
	구	적	사	항(가	조식으로 요약	작성)					
1. 행											
2. 업											
3. 7	타 특0]사항									

※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.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공 적 심 사 의 결 서

심사:	개요

- 1. 일 시:
- 2. 장 소:
- 3. 안 건:
- 4. 심사대상 인원 :
- 5. 공적심사 조서 : 별첨
- □ 주문사항:
- □ 심사결과 :

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.

년 월 일

구	분	직 위	성	명이	서 명	비고
위원	별 장	부 의 장				
부위	원장	의회사무과장				
위	원					
위	원					
위	원					
위	원					
위	원					

붙임 : 공적조서

하 남 시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

포 상 수 여 대 장

포상	발급	포상	1-1							
	번호		1 /11/2	소속	직	성명	생년월일	성별	주 소	공적개요

포상수여 사실확인서

인	성	명		
적 사	생년두	일일		
항	주소(포선	상당시)		
	포상틱	번 호		
포 상	포상=	구분		
내	포상님	1월		
역	공	적		

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20 년 월 일

하남시 의회 의장

【확인자】 소속 :	직위 :	성명 :	(연락처:)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■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